

제329회 임시회  
2014.04.14.(월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14.04.14.(월)
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4년 03월 31일

다. 회부일자: 2014년 04월 02일

라. 상정일자: 2014년 04월 11일

(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노화)

가. 제안이유

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 및 통합 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변화로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145명으로 8명 증원(안 제2조)

2)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
(안 제3조)

3)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별표3)

-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단위기관별 조정:

교육지원청 △1, 직속기관 +1

구 분	정원 변경사항			비고
	개정전	개정후	증감	
정무직공무원	1	1	0	교육감
일반직공무원	2,893	2,901	8	
연구직공무원	12	12	0	연구사
교육전문직원	231	231	0	
총 계	3,137	3,145	8	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검토보고: 수석전문위원 정대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<sup>1)</sup> 8명을 반영하고,
- 통합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변화<sup>2)</sup>로 단위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며,
-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을 “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 공무원”으로 명확히 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병설유치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

2) 청원교육지원청 폐지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3,137명”을 “3,14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899명”을 “2,907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“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<b>총계</b>	<b>3,145</b>			-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1		
교육감	1		1		
<b>일반직 계</b>	<b>2,901</b>			-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2,864			-	
전문경력관 소계	13			-	
<b>연구직 계</b>	<b>12</b>			-	
연구사 소계	12			-	
<b>교육전문직원 계</b>	<b>231</b>			-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1		20	11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	-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3,137명</u>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899명</u>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)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b>3,145명</b>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: <b>2,907명</b>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<b>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</b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도의회 사무처</th> <th rowspan="2"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 rowspan="2"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 rowspan="2"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tr> <th>총계</th> <th>도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총계</td><td>3,137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정무직 계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교육감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2,893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3급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3·4급</td><td>4</td><td></td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4급</td><td>19</td><td>1</td><td>17</td><td>1</td><td></td></tr> <tr><td>5급이하 소계</td><td>2,856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전문경력관 계</td><td>13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직 계</td><td>12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사 소계</td><td>12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<td>231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<td>31</td><td></td><td>19</td><td>12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<td>200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총계	3,137		-			정무직 계	1		1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2,893		-			3급	1		1			3·4급	4		4			4급	19	1	17	1		5급이하 소계	2,856		-			전문경력관 계	13		-			연구직 계	12		-			연구사 소계	12		-			교육전문직원 계	231		-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19	12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도의회 사무처</th> <th rowspan="2"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 rowspan="2"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 rowspan="2"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tr> <th>총계</th> <th>도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총계</td><td>3,145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정무직 계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교육감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2,901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3급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3·4급</td><td>4</td><td></td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4급</td><td>19</td><td>1</td><td>17</td><td>1</td><td></td></tr> <tr><td>5급이하 소계</td><td>2,864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전문경력관 계</td><td>13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직 계</td><td>12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사 소계</td><td>12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<td>231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<td>31</td><td></td><td>20</td><td>11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<td>200</td><td></td><td>-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총계	3,145		-			정무직 계	1		1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2,901		-			3급	1		1			3·4급	4		4			4급	19	1	17	1		5급이하 소계	2,864		-			전문경력관 계	13		-			연구직 계	12		-			연구사 소계	12		-			교육전문직원 계	231		-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20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	
기관별 직급별						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137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2,89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4	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	17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2,856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1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19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145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2,90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4	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	17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2,864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1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20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관 계 법 령 발 체

#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
**제15조(정원의 관리)**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 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**제2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